#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4

발의연월일: 2020. 8. 6.

발 의 자: 강선우·한병도·최혜영

인재근 • 이상직 • 박성준

양기대・홍성국・이수진

맹성규ㆍ허 영ㆍ김영호

황운하 · 김경만 · 김남국

오영환 · 남인순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저조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2. 3.)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인증 제도에 유효기간설정·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내용이 추가 반영된바 있어, 동일한 인증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유효기간 설정·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7까지 및 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절차 및 취소, 제3항"을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

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제3장에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 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등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시설물 및 인증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② (생 략) < <u>신 설&gt;</u> < <u>신 설&gt;</u>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교통 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 및</u>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 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 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 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 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 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u>관</u>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u>방공기업</u>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제1항부
터 제4항까지
<u>⑥</u>
<u>제1항부터 제4항까</u>
<u>지제5항</u>
<u>⑦</u> 제1항부터 제4항까지
<u>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u>
차, 제5항
제6항

<신 설>

<신 설>

-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 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 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신 설>

<신 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3. (생략)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3조(과태료) ① -----

\_\_\_\_\_

-----

\_\_\_\_\_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아니한 자
- 2.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